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17	8	1993. 3. 25.	총재 김명호

의안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72조

제의취지 은행 여신금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리수준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설비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72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

② (생 략)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I. 여 신 업 무 이 율		I. 여 신 업 무 이 율			
구	분	구	분		
1.	(생 락)	1.	(현행과 같음)		
2. 담보대출		2. 담보대출			
가. 무역어음 담보대출	연 6.0%	가. 무역어음 담보대출	연 5.0%	- 1.0% 포인트 인하	
나.~라. (생 락)		나.~라. (현행과 같음)			
마. 방위산업어음 담보대출	연 6.0%	마. 방위산업어음 담보대출	연 5.0%	- 1.0% 포인트 인하	
바.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취급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		바.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취급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			
(1) 제1호에 의한 대출	연 6.0%	(1) 제1호에 의한 대출	연 5.0%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자금용,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등의 금리 1.0% 포인트 인하	
(2) (생 락)		(2) (현행과 같음)			
(3) 제3호에 의한 대출	연 7.0%	(3) 제3호에 의한 대출	연 6.0%	-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 금리 1.0% 포인트	
(4) 제4호에 의한 대출	연 15.0%	(4) 제4호에 의한 대출	전반월 콜거래 평균이율에 2% 포인트를 가산 한 이율(소숫점 둘째자리부터는 떼어버림)	- B2자금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	
II. 기 타		II. 기 타			
1. 시행일자 : 1993. 1. 26	(신 설)	1. 시행일자 : 1993. 3. 26		- 시행일자 명시	
2. (생 락)		2. 이 규정 2-바-(4)의 콜거래 평균이율 산정기준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	
		3. (현 행 과 같 음)		- 호 체하	